



제438회국회(임시회)
제2차 국방위원회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성범죄 신고의무대상 및 신고 방법 확대 등〉
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19703호)

2026. 8.

국 방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공춘택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출 자 : 정부
2. 제출연월일 : 2026. 7. 2.
3. 회부연월일 : 2026. 7. 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군인의 내무생활, 근무, 교육훈련,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딥페이크(Deepfake) 영상 등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성 관련 비위(非違)가 증가하고 있고, 병영생활 내 인적 구성이 군인, 군무원 외에 공무원·근로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, 종전에는 다른 군인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행위의 주체에 관계없이,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외에 성희롱에 대해서도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,

성폭력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상관(上官)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, 국방부, 각군 본부 및 해병대 사령부 내에 각각 두는 성폭력 등 예방·대응 담당관에게도 신고를 하도록 그 신고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군 내의 성 관련 비위(非違)에 대한 신고체계 강화

□ 개정안은 기존 군인이 성폭력·성추행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한정되었던 신고의무를 행위 주체와 상관없이 병영생활 내 성폭력·성추행 및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, 성고충 전문상담관, 성폭력 예방·대응 담당관을 신고기관에 추가함으로써 군 내 성비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(안 제27조 등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27조(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)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<u>성희롱·성추행 및 성폭력 등</u> 의 행위 2. ~ 4. (생략)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7조(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) ① ----- -----. 1. <u>성희롱, 성추행 및 성폭력 등</u> (이하 제41조의2 및 제43조에서 “ <u>성폭력등</u> ”이라 한다)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<u>제41조의2(성폭력등 예방·대응 담당관)</u> ① 병영생활 내 성폭력등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·의료지원·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

제43조(신고의무 등) ① 군인은 병영 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, 폭언,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,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고, 병영생활 내 성폭력등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수립·집행하기 위하여 국방부,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 각각 성폭력등 예방·대응 담당관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담당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(신고의무 등) ① 군인은 병영 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, 폭언,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
2. 수사기관(군 수사기관을 포함한다)
3. 상관

②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성폭력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
2. 제41조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

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. <신 설> 제44조(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)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, 신고 또는 진정 등(이하 “신고등”이라 한다)을 한 사람(이하 “신고자”라 한다)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문상담관 3. 제41조의2에 따른 성폭력등 예방·대응 담당관 ③ -----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관련 기관에 진정 등----- -----.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44조(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) ----- -----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

□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이 성폭력 또는 성추행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상관, 군인권보호관, 수사기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성희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,

가해자도 군인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.

최근 딥페이크 영상 등 군 내 성비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, 성희롱 또한 조직문화와 병영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추행 및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성희롱을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.

- 또한 종전에는 신고 대상이 다른 군인이 저지른 성추행·성폭력 행위로 국한되어,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군인 외의 자가 저지른 비위에는 신고의무가 미치지 못하였음.

최근 딥페이크 등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성 비위가 증가하고 병영 내 인적 구성도 다양화됨에 따라 신고 대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, 행위 주체와 관계없이 병영생활 중 성폭력 등이 발생한 경우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.

추가적으로 성고충 전문상담관, 성폭력 예방·대응담당관은 현재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, 이를 법률상 신고기관으로 추가하여 명시하는 것은 군 내 성비위 신고체계에 있어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□ 다만,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첫째, 개정안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시행일을 3개월 후로 규정¹⁾하고 있는데, 성희롱이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신고의무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둘째, 성 관련 용어에 있어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는 ‘성희롱’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서 ‘성폭력’을 정의하고 있으며, ‘성추행’은 「형법」상 ‘성폭력’ 행위 유형 중 하나인 ‘강제추행’을 의미하고 있으므로, 법률상 용어를 고려하여 개정안의 ‘성희롱, 성추행 및 성폭력’을 ‘성희롱, 성폭력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□ 국방부는 개별 조문에 산재한 성폭력 사건의 용어를 통일하고, 성폭력등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입장임.

1) 개정안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인의 상관 보고 시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제1항에 따라 군인이 상관에게 보고를 한 사건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인이 상관에게 신고를 한 사건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상관에게 보고를 한 군인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관에게 신고를 한 군인으로 본다.

문 의 처
02)6788-5310